# 객관식진도학습

부동산공시법 배상용 교수 5회 (04/09)

#### 1. 등기신청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.
- ② 민법상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.
- ③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촉탁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.
- ④ 사립학교는 설립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⑤ 지방자치단체명의로 등기 할 수 없다.

#### 2. 다음 중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로 옳은 것은?

① 소유권이전가등기

- ②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전세권말소등기
- ③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변경등기 ④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
- ⑤ 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

#### 3. 판결에 의한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 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.
- ② 이행판결은 등기르 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나 형성 판결은 등기없이도 판결확정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.
- ③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,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.
- ④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원인증명정보로써 판결정본과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#### 4. 다음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?

- 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제3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
- ②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에서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보존 등기
- ③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가처분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
- ④ 대지권등기를 마쳤을 경우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
- ⑤ 일정한 권리의 말소등기시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명의의등기의 말소



## 객관식진도학습

부동산공시법 배상용 교수 5회 (04/09)

#### 5. 다음 중 해당 등기신청서의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닌 것은?

- ① 임차권설정등기신청의 경우 차임과 범위
- ② 지상권설정등기신청의 경우 목적과 범위
- ③ 지역권설정등기신청의 경우 목적과 범위, 요역지의 표시
- ④ 전세권설정등기신청의 경우 목적과 범위
- ⑤ 저당권설정등기신청의 경우 채권액과 채무자

### 6. 다음의 등기신청 중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자 전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
- ②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
- ③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 甲이 乙소유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신청한 경우
- ④ 甲소유 농지에 대하여 乙이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
- ⑤ 공동상속인 甲과 乙 중 甲이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

### 7. 등기신청의 취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- ① 등기신청의 취하란 등기신청인이 이미 신청한 등기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의미한다.
- ② 임의대리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.
- ③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.
- ④ 공동신청인 경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는 각각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.
- ⑤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정보에 의하여 한 경우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다.

#### 8. 다음은 등기완료 후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 · 통지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?

- ①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등기필정보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한다.
- ②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필정보는 통지하지 않는다.
- ③ 전세권의 전세금 증가를 위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 전세권의 등기명의인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.
- ④ 등기관이 전세권설정가등기를 한 경우 전세권가등기명의인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.
- ⑤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저당권자에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.

# 객관식진도학습

부동산공시법 배상용 교수 5회 (04/09)

## 객관식진도학습 정답

- 1. ③
- ①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용한다.
- ② 민법상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.
- ④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.
- ⑤ 지방자치단체명의로 등기 할 수 있다.
- 2. 4

①②③⑤는 공동신청의사유이다.

- 3. ③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.
- 4. ③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가 처분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는 가처분채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한 다.
- 5. ④ 전세권설정등기신청의 경우 전세금과 범위는 필요적기록사항이나 전세권설정의 목적은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다.
- **6**. ①

②③④⑤는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.

- 7. ④ 공동신청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취하할 수 있다.
- 8. ③ 전세권의 전세금 증가를 위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아니한다.